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 외 20명
- 의안번호 : 제1685호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2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2. 제 안 이 유

- 옥상녹화 조성 후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누수, 균열 등에 안전위험 사항에 대하여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시행 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(안 제11조제5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상녹화 조성 후 건축물의 누수, 균열 등의 안전 위험 발생 시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 시행 기관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“옥상녹화”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,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녹화사업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한편, 시민 휴게공간과 생물 서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공간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(328,133 m^2)의 옥상녹화지를 조성하였으며¹⁾, 2024년에는 8개소²⁾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.
-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관리책임자가 담당하고 있지만, 건축물의 누수, 균열에 따른 노후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옥상녹화 조성지를 철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있는바, 이 경우 사업시행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옥상녹화 조성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) 옥상녹화 사업현황(2002년~2023년)

- 사업건물수: 총 786개소(민간 399개소, 공공 387개소)
- 옥상녹화 면적: 328,133 m^2
- 누적예산: 총 752억 4천8백만원

2) 2024년 옥상녹화 사업 : 예산(7억 9천9백만원), 대상지(8개소)